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84
------	-----

2011. 6. 28.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1년 6월 10일

나. 제안자 : 고만규 의원외 14명

다. 회부일자 : 2011년 6월 15일

라.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1년 6월 28일)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조례중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또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일부 개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관련 법령 변경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 타 : 해당 없음.

3.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박노수)

가. 조례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일부 조항중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용어의 순화

-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은 지난 2010년 1월 개정을 통해 제45조 장애등급과 관련한 내용중 과거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 장애인을 비하하고 있다고 지적되어온 '폐질등급'이라는 용어를 고쳐 '장애등급'이라고 수정하였음.
- 본 개정안이 이와 같은 법령 개정을 근거로 현재까지 아무런 비판없이 사용되어온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한 행정영역의 관심부족을 질타할 만큼 적절한 조치라도 판단되며, 본 개정안을 계기로 자치법규 전반은 물론이고 행정 전 영역에 걸쳐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각종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의원 상해·사망의 경우 보상금 액수가 얼마인가?
 - 기획조정실장 답변 : 사망시 의정활동비의 2배에 해당하는 약 3천 6백만원 정도이며, 상해치료비는 150만원임.
- 의원들이 직무상 의정활동을 하다가 사망시 3천 6백만원은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고 보며,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 기획조정실장 답변 : 고려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1항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4조의제1항제2호의 "장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에서

제5조1항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4조의제1항제2호의 "장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p> <p>① 제4조의제1항제2호의"장애"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45조 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p>	<p>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p> <p>① 제4조의제1항제2호의"장애"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45조 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p>